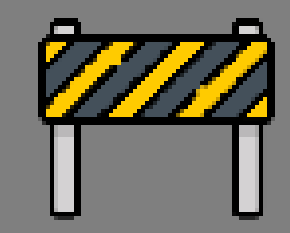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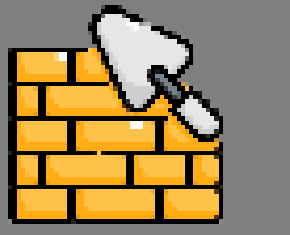
이동식 사다리에서 떨어짐
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동종경력
떨어짐	사망 1명	59세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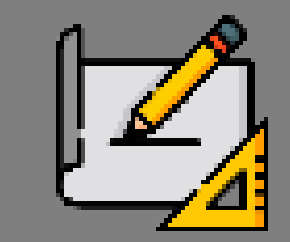
2022. 00.00(목) 00:00경 인천시 소재
0000펜션 주인 거주동 2층 옥상에서
피재자가 옥상에 설치된 바비큐장 지붕(H≒2.5m)
청소를 위해 이동식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
고압살수기로 물청소 작업을 하던 중 옥상바닥
(H≒1.15~1.20m)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



작업상황

비정상 작업

- (정상) 물걸레를 가지러 간 동료작업자(사다리를 잡아주는 역할) 복귀 후 2인1조로 작업 실시
- (비정상) 떨어질 우려가 있는 사다리에 올라서서 안전조치 없이 단독으로 작업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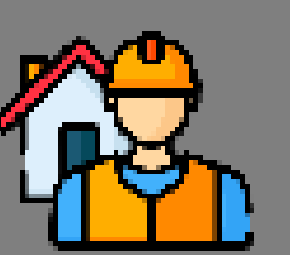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작업방법)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비계 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나 통로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

2 기여요인

- (개인보호구) 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등 개인 보호구 미 지급 및 미 착용
- (단독작업) 동료작업자를 기다리지 않고 단독작업 실시



예방대책

1 추락 위험장소 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철저

- 추락 위험 장소에서 근로자 작업수행 경우 비계 등 안전한 구조의 작업발판설치
-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 등) 지급 및 착용토록 조치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 실시

2 사다리식 통로는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행

- 견고한 구조의 손상 및 부식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하고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하부기둥에 기둥 고정 썬기장치 설치, 기둥측면에 버팀대, 썬기 부착, 2인 1조 작업 실시

3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시 안전작업 수칙 등 기준 준수

- 이동식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*에 한하여 ①평탄·경고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②3.5m 이하의 A형 사다리만 사용 ③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④2인 1조 작업 ⑤사다리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발판위치에서 작업금지

* 경작업 · 고서작업대 ·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